

August 12, 2015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국제조세 부분

2015. 8. 6.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4항)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감면한도 : ① + ② ① 금액기준 - 7년형 : 외국인투자금액 × 70% - 5년형 : 외국인투자금액 × 50% ② 고용기준 - 외국인투자금액의 20% 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i)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등 : 1인당 2천만원 (ii) 청년근로자, 장애인, 60세 이상 : 1인당 1천5백만원 (iii) 기타 : 1인당 1천만원	■ 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① 금액기준 - 7년형 : 외국인투자금액 × 50% - 5년형 : 외국인투자금액 × 40% ② 고용기준 - 외국인투자금액의 40%(7년형) 또는 30%(5년형) 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좌동)

동 개정안은 2016. 1. 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거주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주식 양도 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인지 계산 시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도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text{부동산 비율} = (\text{해당법인의 부동산 가액} + \text{해당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가액} \times \text{다른 부동산 과다법인의 부동산} / \text{다른 부동산 과다법인의 총자산}) / \text{해당법인의 총자산가액}$$

동 개정안은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개정안에서는 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조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국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구 분	개 정 안
적용대상	• 일정 거래 및 자산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함
제출서류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다국적 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관련 거래 현황)
제출시한	• 법인세 신고기한
미제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 개정안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4.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 7 신설)

구 분	개 정 안
일반 파견근로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스스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 (현행과 동일)
고소득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자를 국내에 파견한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대상, 요건, 절차 등은 시행령에 규정) • 원천징수대상금액 : 용역대가(근로소득 확인되는 경우 용역대가 중 근로소득) • 원천징수세율 : 17%(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례세율) • 연말정산 : 근로자를 국내에 파견한 외국법인이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동 개정안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조 준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13 | E-Mail. ccho@shinkim.com |
|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 TEL. 02 316 4219 | E-Mail. ihchung@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